고창군 고시 제2015 - 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시항 변경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5년 08월 일

고 창 군 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정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업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그 선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

제3조(영업시간)

- ① 전라북도 관할수역 내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하절기(4월1일 ~10월31일)에는 04시00분부터 22시00분까지로 하며, 동절기(11월1일~익년3월31일)에는 04시00분부터 20시00분까지로 한다.
- ②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가 가능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6 조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의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정성 검사 확인을 받은 낚시 어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영업시 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갯바위낚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③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낚시어선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낚시어선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.

제4조(낚시통제구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 및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.
- 1. 다른 법령 등에서 출입 및 안내금지,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역
- 2. 갯바위, 간출암. 단, 갯바위에 낚시객 하선시에는 안전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과 낚시어선이 하선장소 주변해상에 정박 또는 정선 등 대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갯바위 낚시 가능.
- ② 영업구역 내 제1항을 제외한 낚시금지구역 지정

구역명	위 치	경 위 도	사 유
미여도	고창군 심원면 동호리	35°-32′-30″ N 126°-26′-15″ E	공군 해상 사격장

제5조(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,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- ②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찰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

구명조끼의 착용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승객을 낚시 가능한 장소에 안내하는 때에는 낚시 승객에 대하여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, 낚시 어선의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을 승선시켜 연접 시·도의 낚시장소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라북도 내 다른 시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 (그 어선에서의 낚시행위 포함)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)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(마약 등) 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의 운항을 금지한다.
- ⑦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증과 승객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, 갯바위, 긴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킨 경우 낚시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(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통신기기 작동 이상 여부 확인 등)하고 인근해상에 대기 및 상호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사항 발생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 하여야 한다.
- ⑨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낚시어선승객의 준수사항

제6조(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의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정하게 입항할 대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2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지시에 위반 하는 행위
 - 3.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
 - 4.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.채취 금지기간.체장.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
- 5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 등을 방해하는 행위
- 6. 영업시간 외 항해요구 및 영업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7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②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 전 고시 제2013-86호(2013.09.02)는 폐지한다.